

## 우주항공청 공고 제2024-0018호

### 2024년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사업 과제 공모

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2024년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사업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8월 28일

우주항공청장 윤 영 빈  
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

#### 1. 공모대상 과제

부문	과 제 명	기간 (개월)	예산 (억원)
우주 수송	재사용발사체 임무-비용 연계분석을 통한 경제성 분석연구	12	1.0
	수요기반 재사용발사체 체계개발 모델 기획연구	12	4.0
	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발사 인프라 확장 필요성 조사 및 확보 전략 탐색연구	12	2.5
	궤도 내 임무 확장을 위한 우주수송선 기획연구	10	2.0
인공 위성	초고해상도 첨단위성 개발 탐색연구	12	2.0
	임무성공을 위한 절차 요구사항 수립 기획연구	9	3.0
	확장형 검증플랫폼 위성 개발사업 기획	10	2.5
	KPS 활용종합시험센터 구축사업 기획	10	2.5
	차세대 군집위성 간 연결기술(ISL)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기획	10	2.0

부문	기획연구명 또는 사업기획명	기간 (개월)	예산 (억원)
우주 탐사	태양 관측 L4 탐사의 타당성 검토, 임무 발굴 및 국제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기획연구	10	4.0
	달 표면 과학·기술 임무 탑재체 개념설계 연구	10	6.5
	우주 임무보증 체계 수립 방안 연구	10	2.7
	천문연구 분야 수요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	12	0.5
	블랙홀과 중력파 연구를 위한 차세대 초고분해능 전파간섭계 개발 기획연구	12	1.0
	우리나라 우주 탐사(화성, 소행성, 유인탐사) 임무 발굴 및 기술 개발 전략 마련을 위한 기획연구	12	3.8
항공 혁신	항공혁신 R&D 포지셔닝 및 로드맵 수립	12	5.0
	미래항공교통 유무인 항공기 혁신기술 개발 기획	12	3.0
	신항공산업 도약을 위한 첨단엔진 및 적용체계 민군협력 개발 기획	12	3.0
	신항공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 첨단 소재/부품 개발 기획	12	2.5
임무 지원단	뉴스페이스 선도를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제도 설계	12	2.0
	우주환경 융복합 기술개발 사업기획	12	2.5
	KASA형 1)SBIR 1단계 연구기획	7	2.0
정책 본부	우주항공정책기능 통합 수행체계 수립 I (정책, 산업육성, 기술개발 분야)	10	10.0
	우주항공정책기능 통합 수행체계 수립 II (인재양성, 우주과학, 우주위험 분야)	10	4.5
	우주항공 법제 정책연구	10	5.5

※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

1) SBIR: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

## 2.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

### □ 신청자격

#### ○ 연구개발기관의 자격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(정의) 제3호 및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 (연구개발기관)에 따른 기관 및 단체

**혁신법 제2조(정의) 3.** "연구개발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·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-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
- 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- 라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- 마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- 바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사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- 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

**시행령 제2조(연구개발기관) ①*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아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 2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  3.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(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-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
1. 주관연구개발기관<sup>가</sup>: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  2. 공동연구개발기관<sup>나</sup>: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  3. 위탁연구개발기관<sup>다</sup>: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(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
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
**제14조(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) ①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(이하 "특정연구개발사업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,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.

1.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
2.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
3.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  - 3의2. 「협동연구개발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
4. 「나노기술개발 촉진법」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
5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
6. 「의료법」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
  - 6의2.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
7. 그 밖에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

※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. 주관·공동·위탁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

○ 연구책임자의 책임과 역할(자격)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
  - ※ 단, 기업의 경우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 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

**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**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
2.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자원에 최선을 다할 것
3.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
4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·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5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·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6. 연구개발성과 창출·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
7.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**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**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
2.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, 그 경제적·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
3.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

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(이하 "연구책임자"라 한다)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
- 본 사업은 우주·항공 분야 사전조사, 기획 성격의 연구과제로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연구개발과제에 포함하지 않음

※ 근거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 제3항 제2호

□ 신청 제한

- (참여제한)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또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

**제59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**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(이하 "참여제한"이라 한다)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
-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(이하 "제재부가금"이라 한다)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.
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(이하 "연구개발비환수"라 한다)할 수 있다.

- 주관연구개발기관, 참여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 제한
- (인건비 계상률\*)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%\*\*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
  - ※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,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(산식 =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/ 연 급여)
-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중 하나라도 아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제한됨
  -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협약 유효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계상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계상률이 100%를 초과한 경우
    - ※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총 과제 수행 계상률이 130%를 초과한 경우
  -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

<지원제외 대상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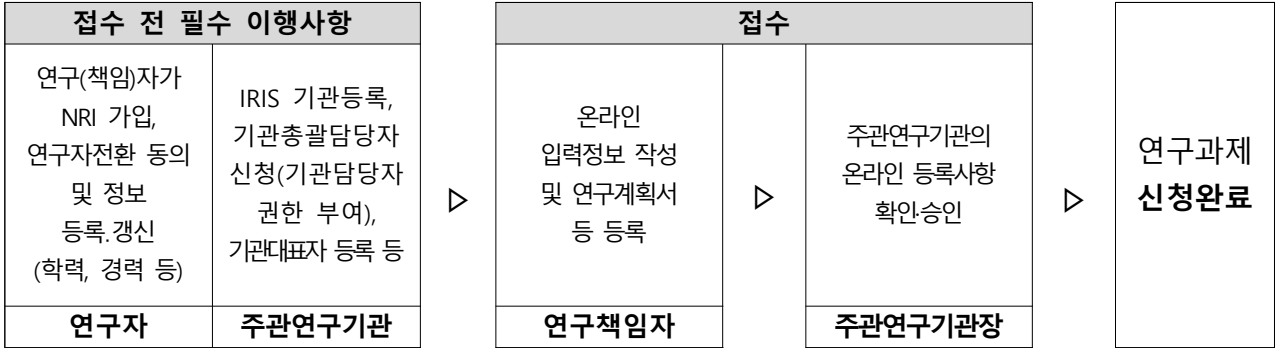
- 기업의 부도      ● 자본전액잠식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)
-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, 신용평가등급 'BBB' 이상인 경우는 예외)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 인 경우
  - ※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, 유동비율 등이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,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

### 3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##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

- ▶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\*를 통해 과제 신청, 평가 및 관리 업무 진행
  - \* IRIS(Integrated R&D Information System):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<https://www.iris.go.kr>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


- ※ 자세한 접수 방법은 IRIS 사용 매뉴얼(연구자용 접수 매뉴얼) 참고(접수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)
- 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- ※ 공모대상과제 중 연구책임자로 1과제만 신청 가능

▶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한 **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**이 있으니, 과제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**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〈참고〉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  
[별첨] IRIS 회원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

①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에서 연구자전환 동의를 통해 국가 연구자번호 발급, ③ NRI 학력/경력\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\*\* 등록 필수

- \* 경력정보의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 \*\* 최근 5년간 수행을 완료한 과제, 현재 수행·신청 중인 과제 목록
- ①, ② 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
- ③ : 연구책임자만 필수

② (주관연구개발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
- 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 또한 'IRIS 회원가입' 및 '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' 필수.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,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 필요

※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유의사항

- 1) 매뉴얼 : [별첨] IRIS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
- 2) 과제신청 시, 주관연구개발기관명은 '00대학교 산학협력단'이 아닌, "00대학교"로 신청요망
- 3)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보(기관대표자 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,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) 등록 필수
  -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승인권한을 득한 경우, 산학협력단 과제뿐 아니라 본교명(00대학교)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
  - ※ 현재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만 기관정보(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)가 등록되어 있어, 접수마감까지 <00대학교>로 정보 변경 및 신청이 어려운 경우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도 신청가능

◆ **관련문의(IRIS 문의처)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**

## □ 제출서류

- 연구개발계획서 1부
- 기타증빙 1부(PDF)

### 〈제출서류 목록〉

구분		항목명
연구개발 계획서	필수제출 서류	연구개발계획서 (주관과제 제출)
		첨부1.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*
	선택제출 서류	첨부2.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
		첨부3. 계상률 조정계획서 및 계상률 현황 첨부4.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(3천만원이상~1억원 미만)
기타증빙	필수제출 서류	1.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
		2.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/연구윤리 준수 서약서
		3. 연구데이터 관리계획(DMP : Data Management Plan)
	선택제출 서류	4. (해당시)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* 기업 참여 시 필수제출서류로 구분
		5.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
		6.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

※ <http://ntis.go.kr>에서 제안과제와 최근 5년 이내 유사 과제 검색후, 해당과제에 대해 차별성 기재)

※ 양식에서 [협약용]으로 표시된 서류는 선정된 과제가 협약 시 작성함

#### □ 제안서 관련 제출자료의 반환 및 평가 및 연구관리 목적 사용

-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우주항공청 및 전문기관(한국연구재단)의 재산으로 귀속되며,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
- 전문기관(한국연구재단)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평가와 관련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 및 연구관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

#### □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

- 목차 1. 연구개발의 필요성 ~ 5.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

12개월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	계획서 분량
	주관(舊단위) 과제
연 5억원 미만	30P
연 5억원 이상	35P

※ 제한 분량 미준수시 평가 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## 4.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

### □ 신청기간

구 분	내 용
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(신청마감일)	2024. 9. 10(화) ~ 9. 26(목) 18:00까지
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·승인기간	2024. 9. 10(화) ~ 9. 27(금) 18:00까지
신청 절차	연구자 접수 ▷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▷ 신청 완료

※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,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검토·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로 인정

- **연구책임자:** [연구책임자 신청 기간] 내에 계획서 등록(신청완료) 및 기관 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**연구수행기관:** [연구수행기관 검토·승인 기간]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(단,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·승인 가능함)
-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불가하며,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

### 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RFP별 응모자가 없는 경우 10일간 재공고하며, 재공고에도 불구하고, 미접수일 경우 추가 공고할 수 있음
-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
  - ※ 단독 응모인 경우,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
-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2개 이상의 과제(주관/공동/위탁포함)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 신청된 과제에 대해서만 평가 진행
-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, 필수제출서류 미비,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,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
-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, 과제 구성, 연구비, 연구 기간 등 조정 가능



-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(단,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)
  - ※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증빙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(선정 취소 등) 가능
- 신청기관은 **과제 공고 이후 예정인 사업설명회(24. 9. 4(수) 예정)** 참석을 권고함
  - ※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은 추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별도 공고
- IRIS 접수매뉴얼 확인 방법 : **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**(<https://www.iris.go.kr>)
  - 알림/고객 → 자료실 → IRIS 사용 매뉴얼 ‘접수매뉴얼’ 다운로드
-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에 의함
-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, 별도 공지 예정
  - ※ 연구과제별 상세사항은 ‘붙임1. 과제제안요구서’ 참조

## 5. 선정방법 및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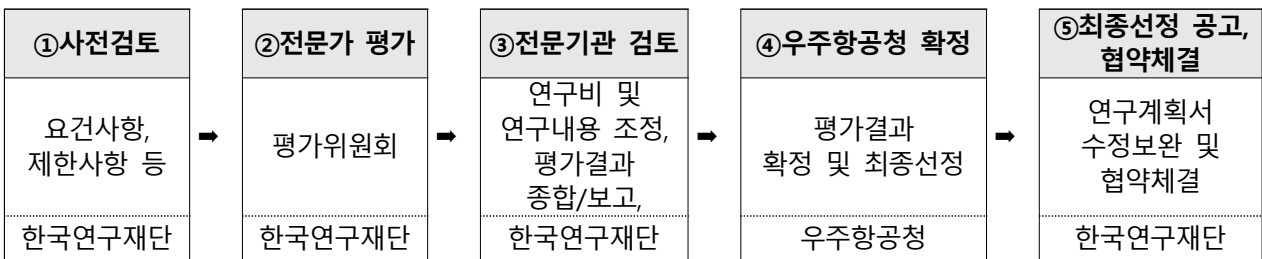
### □ 평가 기본방향

- 과제 RFP별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,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신규과제를 선정

### □ 평가 방법 : 발표 또는 서면평가

- ※ '24.10월 중 평가 실시 예정이며, 발표방법 및 시간 등 세부일정은 추후 안내
- ※ 코로나-19 확산 등 외부 요인에 따라 ‘비대면 온라인평가’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(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 개별 안내)

### □ 평가 절차



#### ① 사전검토

- 제출서류 구비 여부,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·단체·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 여부, 신청 자격 적합 여부, 과제와의 유사·중복성 등 검토

## ② 전문가 평가

- 평가방법 : 해당 연구책임자의 신청서 내용과 발표를 토대로 평가
  - ※ 평가대상 과제 수에 따라 서면평가(필요시) 등을 통해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가능
  - ※ 동점 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
  - ※ 평가위원 구성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평가계획(안)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## ③ 전문기관 검토

- 전문가 평가 결과, 예산사정,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과제별 예산규모 및 과제 구성 등을 조정하여 선정(안)을 수립
- 복수 응모의 경우,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
- 단독 응모인 경우,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

## ④ 우주항공청 확정

- 전문기관이 제출한 선정(안)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, 공정성, 연구비 대비 적정성,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과제를 최종 확정

## ⑤ 최종선정 공고 및 협약체결

-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
  - ※ 단독과제 선정으로 (선정제외) 이의신청 대상자가 없거나 선정 제외자가 이의 신청 포기 의사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협약 등 후속 절차 진행 가능
- 평가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, 과제 구성, 연구비,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

## □ 평가 지표

평가항목	배점	비고
연구수행 체계/전략의 적합성	35	과제기획서 구성의 적절성 검토
연구책임자의 전문성/연구역량	25	역량 판단을 위한 개인정보활용
기대성과 및 정책반영 가능성	30	우주청 중장기 로드맵 일치성 판단
연구비 규모/집행계획의 적정성	10	연구비 사용계획서 검토
<b>계</b>	<b>100</b>	

※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,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(연구수행 체계/전략의 적합성(35점) → 기대성과 및 정책반영 가능성(30점) → 연구책임자의 전문성/연구역량(25점) → 연구비 규모/집행계획의 적정성(10점))

## 6. 기타사항

### □ 연구개발성과의 국가 소유에 다른 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면제

※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2항

### □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

-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(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 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)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

####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

**제8조(연구노트의 작성)**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(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을 말한다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~ 중략 ~ 인문·사회분야, 인력양성,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(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)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.

### □ (인체유래물 이용 시)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심의 의무화

-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의 심의를 받아야 함.
- 각 소속기관(대학 등)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
  - IRB 심의결과 제출·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(IRB 포함)에서 담당
    - ※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(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)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
-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
  - ※ 문의처 :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(02-737-8970~1)

\*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, 대인접촉 등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,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(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)

### □ (인체유래물 이용 시)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

-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\*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(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(분양대표 전화 1661-9070))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해야 함.
  - ※인체유래물 : 혈청, 혈장, 소변, 혈액유래 DNA, LCL, LCL유래 DNA 등

### □ (LMO 이용 시)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

-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.
- 시험·연구용 LMO 정보시스템(<https://www.lmosafety.or.kr/mps>) 확인

□ (해당시) 생명연구자원(소재+데이터) 기탁·등록 의무 이행

- 본 과제 선정 시, 산출되는 생명자원(생물자원 및 생명정보)을 「생명연구자원의 확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·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
  - ※ ‘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’ (20.5.)에 따라 전문기관은 과제 점검 및 평가 시 등록 현황을 관리할 수 있음

□ (필수) 연구데이터 관리

- 본 과제 선정 시, 「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·보존·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‘데이터관리계획’ 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(계획서 첨부 양식)
  - ※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, 관찰,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
  - 선정평가-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(DMP)을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정·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
  -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, 장소, 기간,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
    - ※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(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, 논문·특허 등 성과 발표시 실 데이터 공개)

□ (해당시) 젠더혁신 관점 연구

-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/젠더(성과 젠더, 성 또는 젠더)요소와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붙임양식(체크리스트) 참고하여 계획서 작성

## 8. 향후 일정

일정	내용
2024. 9.10 (수) ~ 9. 26(목)	연구개발계획서 접수(신청 마감일)
2024. 9.10 (수) ~ 9. 27(금)	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·승인기간
2024. 10월 초	평가 실시(발표 또는 서면)
2024. 10월 중	선정통보 및 예비선정 공고
2024. 10월 말	협약 체결 및 연구개시

※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 9. 문의처

- (온라인 입력 및 제출관련 문의)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1877-2041)
- (과제관련 문의)

부문	전화번호
우주수송	055-856-5151
인공위성	055-856-5236
우주탐사	055-856-5312, 5352
항공혁신	055-856-4233
임무지원	055-856-5018
정책본부	055-856-4212

- (이메일 Q&A) [newspace@korea.kr](mailto:newspace@korea.kr), [yun2631@korea.kr](mailto:yun2631@korea.kr)

- 붙임 1. 2024년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사업 RFP
2. 2024년도 우주항공청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사업 안내
  3. 연구개발계획서 서식
  4.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  5.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
  6.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